



# LEGAL UPDATE

환경규제대응센터

Sep. 2024

## 「2024 국정감사 이슈」: 환경 분야

국회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매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국정감사는 2024년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이슈 별로 기업에 대해 각종 자료 요청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국정감사 전후로 논의된 이슈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 8. 19.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토대로 하여 환경 분야에 관한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국정감사 환경 분야 이슈
2. 주요 이슈별 내용
3. 결론

### 1. 2024 국정감사 환경 분야 이슈

이슈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녹색연합이 발간한 「2023년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사례집」에는 부산 대저대교 건설 사업,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됨.</li><li>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거짓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음.</li></ul>	국가책임공탁제의 도입, 저가대행 관행 해소 정책 방안 마련 등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이행 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환경부는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GHP를 대기오염배출시설로 지정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함.</li><li>환경부와 교육부는 2024년 말까지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불충분한 지원, 불공정거래 등 문제가 지적됨.</li><li>또한 관련 분쟁 발생시 해결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문제도 지적됨.</li></ul>	예산 등 관리 방안 제시, GHP 고장안전상 문제 관련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 개선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는 대기배출사업자로 하여금 자가측정을 실시하거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음.</li><li>환경부는 각종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나, 2023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하여 실시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업체가 다수 있었음.</li></ul>	정기적인 전수조사 실시, 현장 교육 및 제재 강화 등 실효적인 방안 마련 등

<p><b>조기폐차 지원사업 체계적 관리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며, 대상 범위의 확대로 사업의 실행행도 높아짐.</li> <li>그러나 보조금을 받고 폐차된 경유차 중 30%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원실적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자동차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li> </ul>	<p>중고차 관리제도의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의 실적을 높이는 방안 마련 등</p>
<p><b>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시설허가 조건 이행 점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풍 석포제련소는 2013-2022년 점검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이 있었고, 이에 환경부는 2022년 12월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환경허가를 결정하였으나, 2023년 4월 실시된 첫 통합환경정밀검사에서도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2023년 10월 기준으로 2024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설비개선 부분의 진행률도 15% 정도 수준이었음.</li> </ul>	<p>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은 2025년까지 이행을 전제로 한 통합환경허가 조건의 이행을 보다 철저히 모니터링하여야 함.</p>
<p><b>플라스틱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체계 점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리배출 표시와 재활용 용이성 표시 중 전자는 소비자가 포장재를 배출할 때의 표시이고 후자는 포장재를 구입할 때의 표시인데, 이 두 가지 표시가 한꺼번에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li> </ul>	<p>‘재활용 용이성’ 표시와 ‘분리배출’ 표시를 분리하여 표시하는 방안 마련 등</p>
<p><b>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인하여, 해제를 요구하는 상류지역 지자체와 유지를 요구하는 지자체 간의 갈등 등이 커지고 있음.</li> <li>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반대하는 하류 지자체가 해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임.</li> </ul>	<p>지자체·전문가·주민 참여를 보장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보호구역 해제 절차시 실태조사 실시 여부를 환경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비 기본계획의 변경 용역 예산에 국비 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하천의 유속 개발 현황 등 반영하여 보호 구역 재설정 등</p>
<p><b>표준용기 활성화를 통한 빈용기 재사용 체계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제도를 시행 중이나, 2019년을 기점으로 비표준용기나 일회용 용기의 사용이 증가함.</li> </ul>	<p>생산·판매·소비·회수 단계별 유인책 필요, 비표준용기의 경우 보증금 대상 사업자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비표준용기의 재사용 늘릴 수 있는 방안 모색 등</p>
<p><b>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주민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시멘트 소성로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염화수소에 대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가지고 있음.</li> <li>「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폐기물소각시설과 달리, 시멘트 소성로는 해당 법이 미적용되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li> </ul>	<p>시멘트 업계가 이미 조성한 사회공헌금의 집행 등이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구조 마련, 시멘트 소성로를 ‘지역자원시설’의 하나로 지정하여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 시멘트 소성로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등</p>
<p><b>토양 내 자연기원 불소물질 체계 개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는 불소 배경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기원일 경우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 정화하거나 그 위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까지 사후관리하여야 하므로, 정화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자연기원 불소에 무한 책임이 있음.</li> </ul>	<p>「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불소 총량 측정법과 함께 인공기원 불소 측정 방법 별도 마련, 자연기원 불소의 섭취특성 반영하여 지하수 섭취 계수에 대한 가중차고려 등</p>
<p><b>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현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부는 2020년부터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방안’을 추진중이나,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환경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발전용댐인 화천댐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에 포함시킴에 따라 특정 기업지역 특혜 제공 등 비판 제기됨.</li> </ul>	<p>발전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물이용 및 배분에 관한 국가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지역 간 물분쟁 방지 등</p>
<p><b>도시하수 예·경보 실시 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 9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제정되었으나, 특히 하수도 관련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화가 미비하고, 도시침수 예보 대상인 ‘유역’의 범위가 결정되지 않음.</li> </ul>	<p>하수도 시설 모니터링 기반 구축, 보조 관측장비 활용, 도시침수 예보 위한 세부 기준 결정 등</p>

지방하천 관리 재원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하천 관리 강화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지방재정 부족과 지자체 관심 저하 등이 문제됨.</li> </ul>	(가칭)하천관리특별회계' 설치·운영, 하천관리기금 활용 등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후 석면 노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후로 석면 노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옴.</li> <li>관련 법적·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공사진행, 관계자의 석면에 대한 무지와 관리부실, 석면검출에 대한 무책임 등 문제됨.</li> </ul>	석면 업체, 공사 기간, 폐기물 반출, 감시 모니터링단 권한 등에 관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교통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시간 소음지도 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법에 정부·지자체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교통소음 관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li> </ul>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국가 소음 측정망 확장, 실시간 소음지도 작성 의무화 등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에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면서 허가요건으로 서식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관리·사육기준을 매뉴얼로 마련하였으나, 허가요건은 충분하지 않고 매뉴얼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동물 학대방지 논란 계속됨.</li> </ul>	현재 마련되어 있는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매뉴얼」 일부를 허가요건으로 하여 의무화

## 2. 주요 이슈별 내용

위 이슈들 중 ①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방지, ②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 개선 방안 마련 필요, ③ 플라스틱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체계 점검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방지

#### 가) 관련 법령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단지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개발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이하 법령 생략),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거짓·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경우 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제58조 제1항 제8호), ②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는 신규 사업에 대한 계약이 불가능하며(제59조 제3항), 만약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74조 제7호) ③ 거짓 작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양벌규정이 적용되며(제74조 제4호, 제75조), 부실 작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6조 제3항 제3호).

####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는 2021년, 2023년 국정감사 등에서도 지적된 이슈인바, 녹색연합이 발간한 「2023년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사례집」에는 ① 부산 대저대교 건설 사업, ②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③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④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⑤ 강원 자별산 석회광산 복원 사업, ⑥ 강원 가리왕산 복원 사업, ⑦ 청주 쓰레기 소각장 밀집 문제, ⑧ 군산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⑨ 경북 500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⑩ 경북 오미산 풍력발전 사업 사례가 포함되었습니다.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적인 이유로는 저가대행의 관행 및 전문 인력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으며, 저가대행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전문 인력이 유출되면서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정부기관이나 제3기관에 예치하고, 비용을 예치 받은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는 '국가책임공탁제'의 시행, 기술 인력 양성 및 저가 대행 관행 해소 정책 방안 마련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 시사점

거짓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업자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역시도 벌칙의 대상이 되므로(제74조 제1항 제4의3호), 환경영향평가법령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관련 법·제도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등 이번 정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탁제 도입, 처벌 규정 강화, 의견수렴 대상 범위의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규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가) 관련 법령

대기배출사업자는 자가측정을 실시하거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1종부터 3종에 해당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각 대기배출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보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 3 사업장 분류기준]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는바, 환경부는 2019년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허위측정 처벌강화(아래의 표 참조), 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 신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의2)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환경시험검사법상 측정대행업체 처벌 강화(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

구분	기존	강화
벌칙(제33조)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5년 징역, 5천만원 벌금
행정처분(제17조 제3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기술인력(제17조의2)	-	1년 자격정지

또한, 환경부는 2022년부터 전과정(계약·측정·분석·결과)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 시스템(측정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과 환경측정 분석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화력발전소 및 소각시설 63개소의 대기오염 자가측정 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87.3%가 허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환경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하였고, 환경부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323곳을 전수조사하여 관계법령 위반업체 38곳을 적발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측정된 것으로 허위 작성한 2개 업소에 대해 고발 및 등록처분취소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는 **정기적인 전수조사의 실시와 현장 교육 및 제재 강화 등 자가 측정 허위부실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다) 시사점

위에서 설명드렸듯 자가측정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등에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므로(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의4호), **관련 사업자들은 정상적으로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오염물질 감축을 통해 거짓 자가측정의 유인을 제거하고 관련 규제의 적용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3) 플라스틱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체계 점검

#### 가) 관련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4조에 따라 ‘분리배출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에 따라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플라스틱류)를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4에 따라 재활용의 용이성 등을 평가받고 이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하는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평가 등급을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특히 이 중 **‘재활용 어려움’의 표기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리배출’ 표시는 소비자가 포장재를 배출할 때 분리배출을 하여야 한다는 표시이고, ‘재활용 용이성’ 표시는 소비자가 포장재를 구입할 때 재활용이 용이한지 파악하여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이나, 이 두 가지 표시가 한꺼번에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그 구성품 중 플라스틱류가 많음에도 구조상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된 경우가 많아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소포장되는 경우가 많아 표시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는 '재활용 어려움'의 표시 방식을 변경하여 '분리배출' 표시와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화장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시 방법 고안 및 화장품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다) 시사점

올해 11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다섯번째이자 마지막인 정부간협상위원회 (INC)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플라스틱 생산 감축 여부, 감축목표 설정 여부, 이행방식 등에 대하여 논해질 예정인바,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의 레베카 채프먼 기후환경대표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기후경쟁력포럼에서 발언하였듯, "순환경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신소재나 포장설계, 새로운 사업모델, 재활용 기술과 같은 투자 기회를 창출한다"고 밝힌 것과 같이, 플라스틱 재활용은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및 국내 법령의 내용, 더 나아가 향후 신사업을 추진하는 순환경제 전략의 일부가 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자들은 플라스틱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입법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결론

국정감사에서 위와 같은 이슈가 논의되고 자료 요청, 증인/참고인 출석, 시정 및 처리 요구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위 이슈와 국정감사의 진행 경과,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등 환경 구성 요소들에 관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며,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여러가지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환경 분야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전 주기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 김도형

수석전문위원

T. (+82) 2 6182 8723

E. [dohyungkim@yoonyang.com](mailto:dohyungkim@yoonyang.com)

#### 한수연

파트너변호사

T. (+82) 2 6182 8343

E. [sooyh@yoonyang.com](mailto:sooyh@yoonyang.com)

####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mailto:kwlee@yoonyang.com)

####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T. (+82) 2 6003 8543

E. [psjin@yoonyang.com](mailto:psjin@yoonyang.com)

#### 김민경

변호사

T. (+82) 2 6182 8546

E. [mkkim@yoonyang.com](mailto:mkkim@yoonyang.com)

#### 고은민

변호사

T. (+82) 2 6182 8539

E. [emko@yoonyang.com](mailto:emko@yoonyang.com)